

충남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생긴다 정신응급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

-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신규 지정, 전국 11개 시·도 14개소로 확대 -
-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, 24시간 정신응급진료 기반 확대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8월 4일(화)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을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해 11개 시·도에서 14개소의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가 운영된다고 밝혔다.

* (근거법령) 응급의료법 제30조의5(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)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자해·자살 시도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신체적 응급처치가 필요한 정신응급 환자에게 24시간 신체·정신과적 통합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이다.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*를 운영하는 시·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·인력 기준과 정신응급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해 지정되며, 응급실 내 전용 병상에서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하여 내·외과적 처치와 정신과적 평가·치료를 함께 제공한다.

*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시도별 경찰청, 소방본부, 정신건강 복지센터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·운영 중

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개 시·도에서 13개소를 지정·운영해 왔으며, 올해 공모(6.19.~7.6.)를 통해 그동안 권역정신응급의료 센터가 없었던 충청남도에 1개소*를 추가 지정하였다.

*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(충남 천안시, 권역응급의료센터)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는 단기관찰구역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비와 의사·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. 또한, 단기관찰구역에서 진료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(1일 1회, 72시간 동안 최대 3회)와 정신응급환자 초기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,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*와 원격협의진찰료**에도 정신질환자 가산이 적용된다.

* 중증응급(의심)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진료과목(전문분야)별 산정

** 의료법 제34조(원격의료)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여 원격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

이번 지정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1개 시·도 14개소*로 확대된다. 이에 따라 충남 지역의 정신응급 환자도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평가·치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어,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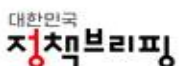
* ('22) 8개소 → ('23) 10개소 → ('24) 11개소 → ('25) 13개소 → ('26.8월) 14개소

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.

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“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신체적 응급처치와 정신과적 치료가 모두 필요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정신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개요

담당 부서	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경미	(044-202-3860)
		담당자	사무관	박희정	(044-202-3866)



□ 주요 내용

- (사업 목적)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정신과적 평가·치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
- (사업 내용) 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(2병상) 리모델링과 의사·간호사 인건비 등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- ▶ (지원예산) '26년 4,494백만 원(개소당 연간 642백만 원, 국비 50%+지방비 50%)
- ▶ (선정기준)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시설·인력기준을 갖춘 기관
 - 정신응급단기관찰구역(관찰병상 2병상 이상) 확보, 응급의학과·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간호사, 보안인력 등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필요(최소 2명 이상)

□ 지정 현황

- '26.8월 14개소('22년 8개소, '23년 10개소, '24년 11개소, '25년 13개소)
 - * (서울) 서울의료원,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, (인천)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, (대전) 충남대병원, (충남)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(울산) 울산대병원, (경기) 용인세브란스병원,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, (강원) 강원대병원, (전북) 원광대병원, (경북) 안동병원, 동국대 경주병원, (경남) 창원한마음병원 (제주) 제주대병원

□ 관련 수가

- (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관리료)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 정신응급 단기관찰구역 병상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(최대 3회, 72시간) 산정
- (정신응급환자 초기 평가료) 응급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의 초기 사정*이 이루어진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
 - * 「신체 및 정신질환 평가 체크리스트」를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
- (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, 원격협의진찰료) 산정 시 정신질환자 가산
 - * (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) 중증응급(의심)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산정
 - ** (원격협의진찰료)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협진을 시행한 경우 산정